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| 과태료의<br>금 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·조사·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·제거행위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65조제2항제1호 | 150만원       |
| 나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·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2호 | 200만원       |
| 다.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·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3호 | 100만원       |
| 라.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3항제1호 | 50만원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마.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4호 | 100만원 |
| 바.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3항제2호 | 50만원  |
| 사.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| 법 제65조제2항제5호 | 200만원 |
| 아. 법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3항제3호 | 50만원  |
| 자.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3항제4호 | 50만원  |
| 차. 법 제36조제5항(법 제27조 및 제30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)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| 법 제65조제1항    | 500만원 |
| 카.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, 출입·취사·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| 법 제65조제2항제6호 | 100만원 |